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75호 2024. 10. 18.(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1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20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0.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개정 (안 제3조, 안 제7조)
- “「문화재보호법」”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안 제2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

(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593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개정 (안 제3조, 안 제7조)
- “「문화재보호법」”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안 제2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 이라 한다)”을 “향토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국가·시지정문화재”를 “국가·시지정문화유산”으로, “것과”를 “유형·무형기념물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를 “향토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유산 지정)”을 “(향토문화유산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은”을 “향토문화유산은”으로, “문화유산의”를 “향토문화유산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유산의 종류)”를 “(향토문화유산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을”을 “향토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을 “향토문화유산을”로, “문화유산 소유자”를 “향토문화유산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유산의”를 “향토문화유산의”로, “문화유산 주변”을 “향토문화유산 주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유산의”를 “향토문화유산의”로, “문화유산 보존”을 “향토문화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 중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를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을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형

문화재”을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재청의 재난관리 주관기관란 및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체육부
-----------	---------------	---------

⑧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보행관련 시각매체의 세부 항목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향토문화유산</u>(이하 "문화유산"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p> <p>1. 「<u>문화재보호법</u>」 또는 「<u>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u>」에 따라 <u>국가·시지정문화재</u>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 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p> <p>2. <u>향토문화재</u>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p> <p>3. 4. (생략)</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u>문화유산</u>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서구 <u>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u>(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2. (생략)</p> <p>3. <u>문화재</u>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제2조(정의) ----- <u>향토문화유산</u>----- ----- ----- -----.</p> <p>1.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또는 「<u>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u>」---- <u>국가·시지정문화유산</u>----- <u>유형·무형기념물</u>과 ----- <u><삭 제></u></p> <p>3.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u>향토문화유산</u>의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국가유산</u>----- ----- ---</p>

4. ~ 7. (생략)

⑤·⑥ (생략)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문화유산 지정)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제2조 유·무형 자료 및 유산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 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국
가유산 관련 -----.

제4조(위원회 기능) -----
-----.

1. 향토문화유산-----
2. 향토문화유산-----
3. 향토문화유산-----

4. ----- 향토문화유산-----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

-----.

② ----- 향토문화유산-----

-----.

③ ----- 향토문화유산-----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 주어야 한다.

⑤ (생략)

제7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소재지 동장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8조(지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3. (생략)

② (생략)

제9조(문화유산의 종류) 구청장은 제6조의 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

④ ----- 향토문화유산-----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자 지정) ① ----- 향토문화유산-----

-----.

② ----- 향토문화유산은 ----- 향토문화유산의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정의 해제) ① -----
----- 향토문화유산-----

-----.

1. --- 향토문화유산-----

2. 향토문화유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향토문화유산의 종류) -----
--- 향토문화유산을 -----

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 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고시)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 을 지정 및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3. 4. (생략)

제11조(보존·관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 문제

-----.

제10조(고시) ① ----- 향토문화유산을 -----
--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향토문화유산-----

3. 4.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

-----.

1. ----- 향토문화유산-----

-----.
2. ----- 향토문화유산의 -----

----- 향토문화유산
주변-----
-----.
3. ----- 향토문화유산의 -----

----- 향토문화유산 보존 -

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점검·기록)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관리점검·기록) ① -----
향토문화유산-----

② ----- 향토문화유산-----

제13조(경비보조) ① -----
----- 향토문화유산-----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관계 법령 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의견제출서

검토구분		유	무
검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성명(단체명/대표자)

2.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10.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본 조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 기준 내용 수정 및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수정
-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련 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가정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3442, 팩스 032-560-274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남성 근로자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기준 개정(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7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 기준) ①<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u>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u>7개월</u>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서구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4조(지원 기준) ①<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u>6개월</u>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p>

관계 법령 발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 ④ 생략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